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48
----------	------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

나. 발의일자 : 2021년 8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 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함(안 제8조제3항)
-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 서울시가 ①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고, ② 체계적인 관광특구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최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발의하였음.
- 「관광진흥법」 제47조의8¹⁾은 스마트관광산업²⁾의 육성을 도모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1) 2021년 6월 15일 신설, 2021년 9월 16일 시행.

2)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관 광 진 흥 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9.16.]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광구역을 대상으로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³⁾하고 있으며, 관광 행태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축적·분석·제공하는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중 ‘스마트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3) 2020년 시범사업 시행 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

서울시 또한 2017년 디지털 스마트관광안내포지판 설치·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스마트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 계획4)’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재단법인화가 완료된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스타트업 육성, 관광·MICE 통계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디지털 전환 관광안내 플랫폼 구축’ 등의 신규사업 수행을 통해 스마트관광 산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임.

또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초토화된 관광산업5)의 미래자원으로 동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안 제4조제3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재정지원(안 제15조제1항제13호)을 가능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향후 해당 정책에 대해 전격적인 추진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임.

향후 서울시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예산편성, 조직 구성6)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동 개정안 제8조의제3항 신설은 서울시장이 「관광진흥법」 제73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를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4) 본 계획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서울의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서울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4차산업 기반 기술을 보유한 민관 협력으로 콘텐츠 제작 효율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5) 2019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은 1,39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2020년 119만명으로 91.4%가 줄어들었으며, 2020년 도 서울소재 여행사는 408개가 폐업하는 등 관광생태계가 초토화 된 상황임.

6)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1월 관광디지털본부(3실 10팀, 현원 110명)를 조직 내 신설(붙임1 참고)하여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및 한국관광 데이터랩 등 관광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꾀하고 있음.

관 광 진 흥 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10.14.]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73조제2항이 기존 관광특구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가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여론 등을 사유로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를 의무화 한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서울시의 관광특구 현황⁷⁾은 하기와 같음.

〈 서울시 관광특구 현황 〉

자치구	특 구 명(지정일)	면적(m ²)	지 정 위 치
용산구	이 태 원 (1997.9.29.)	383,292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3.30.)	872,809	
	동대문패션타운(2002.5.23.)	585,709	
종로구	종로·청계 (2006.3.30)	540,602	
송파구	잠 실 (2012.3.15)	2,310,000	
강남구	강남마이스(2014.12.18)	190,386	

※ '12. 12. 27.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면적확대 지정 고시
- '00. 3. 30. 기 지정된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를 신규 다동·무교동 지역을 포함하여 확대지정

7) 현재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마포구 '홍대관광특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 시 숙박·상가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행정지원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으나 해당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등지 내몰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광특구' 외 '문화예술특구'를 신설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 중(문화본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디지털조직 상세현황

본부	실	팀	주요업무	인원
관광 디지털 본부 (110명)	디지털 혁신실 (19명)	디지털 혁신팀	○ 디지털 혁신 전략 ○ 디지털 전환 문화조성	5명
		디지털 전환 추진팀	○ 신규 디지털 전환과제 이행 ○ 정보자원관리체계 운영 ○ 정보화사업 대외평가 수검 대응	5명
		디지털인프라팀 (정보보안파트)	○ 스마트환경구축, RPA ○ 정보시스템 인프라(서버/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정보보안 ○ 사내 정보화 업무지원(OA기기, 전 산소모품 보급, 수선유지)	9명
	관광 빅데이터실 (25명)	관광빅데이터 전략팀	○ 관광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관광빅데이터 서비스 기획(여행예보 서비스, 우리지역 관광 상황관 등) ○ 관광 빅데이터 포럼	8명
		관광빅데이터 서비스팀	○ 한국관광 데이터랩 운영 ○ 한국관광통계, 관광마케팅조사, 관광 시장정보	8명
		관광컨설팅팀	○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운영 ○ 지자체 유/무료 관광 컨설팅, 관광 (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9명
	디지털 마케팅실 (44명)	브랜드마케팅팀	○ 한국관광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및 매체광고 ○ 해외지사 광고기획 및 한국관광 유 튜브 채널 운영	5명
		해외디지털	○ VisitKorea 외국어 웹페이지 및	31명

본부	실	팀	주요업무	인원
		마케팅팀	모바일 앱 운영(영어, 일어, 중어 간체, 중어 번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어 등) ○ 전어권 공동 콘텐츠 생성 및 검색 엔진 마케팅 관리 지원	8명
		국내디지털 마케팅팀	○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페이지 및 모바 일앱, SNS 및 유튜브 운영 ○ 디지털스토리텔링 서비스 '오디(Odii)' 운영 관리 ○ SNS 취재단 '다님' 및 대학생 서포 터즈 운영	
	디지털콘텐츠센터 (18명)		○ 다국어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 외국어 표기 번역감수 지원 ○ 전국 사진촬영 및 사진갤러리 운영 ○ TourAPI 운영 및 실감콘텐츠 제작	18명
본부장(1명) 및 실장(3명)				4명
계				110명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소영,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최기찬, 황규복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함(안 제8조제3항)
- 나.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8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같은 항 제14호로하고 제1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스마트관광산업

제8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7.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7. (현행과 같음)</p> <p>8. <u>“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u></p>
<p>제15조(재정지원) ① (생략)</p> <p>1.~12. (생략)</p> <p><u><신설></u></p> <p><u>13.</u> (생략)</p>	<p>제15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1.~12. (현행과 같음)</p> <p><u>13. 스마트관광산업</u></p> <p><u>14.</u> (현행 제13호와 같음)</p>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